

# 「창원 롯데캐슬 어반포레」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 165-7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2층, 지상 36층 7개동, 총 981세대 중 일반분양 748세대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 10% 이내, 총 69세대
- 창원 롯데캐슬 어반포레 아파트 748세대 신규 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 일정계획(예정) : 공문 회신일은 2022.06.14.(화) 12시까지 송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22.06.09.(목)	당사 홈페이지, 청약홈 및 신문공고
특별공급 신청일	2022.06.20.(월)	'청약 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인터넷 신청 / (09:00 ~ 17:30)
당첨자 발표일	2022.06.28.(화)	'청약 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일	2022.06.28.(화)~2022.07.03.(일)	건본주택 :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번지
정당계약 체결일	2022.07.11.(월) ~ 07.15.(금)	사전 방문예약제(예정) : 당사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개요

(단위 :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비 고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39.6755	18	1	-	3	-	1	5	13	
59.9920	58	6	6	12	1	6	31	27	
59.9870	25	3	3	5	1	3	15	10	
84.9976	388	39	39	78	12	39	207	181	
84.9583	201	20	20	40	6	20	106	95	
112.9929	58	-	6	-	2	-	8	50	
<b>합 계</b>	<b>748</b>	<b>69</b>	<b>74</b>	<b>138</b>	<b>22</b>	<b>69</b>	<b>372</b>	<b>376</b>	

## ■ 배정 세대수

구 분	배정 세대수						예비 배정 세대수						
	39	59A	59B	84A	84B	소계	39	59A	59B	84A	84B	소계	
일반 (기관 추천) 특별 공급	국가유공자	-	1	1	8	4	14	-	1	1	8	4	14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7	4	12	-	1	-	7	4	12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	-	7	4	12	-	1	-	7	4	12
	중소기업근로자	1	2	1	9	4	17	1	2	1	9	4	17
	장애인(경상남도)	-	1	1	8	4	14	-	1	1	8	4	14
<b>합 계</b>	<b>1</b>	<b>6</b>	<b>3</b>	<b>39</b>	<b>20</b>	<b>69</b>	<b>1</b>	<b>6</b>	<b>3</b>	<b>39</b>	<b>20</b>	<b>69</b>	

※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청약신청 및 동·호수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천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현장접수 안내

- 대 상 자 : 해당기관 추천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 청약접수일 : 특별공급 청약접수일 2022.06.20.(월) 10:00~14:00까지 (14시 이후 접수 불가)
- 방문접수처 : 건본주택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번지]
- 기타사항 : 해당기관 추천자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특별공급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특별공급 접수 구비서류를 모두 완비하여 청약접수일에 건본주택에 내방하시어 특별공급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당첨자)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 \* 장애인의 경우에도 해당기관에서 당사로 통보한 자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li> </ul> </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li> </ul> </li> </ul> </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 저축 요건 의무 없음.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li> </ul> </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창원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또는 그 세대원(배우자를 포함하며,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세대원 포함)이 각각 신청 또는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당첨일자가 중복되는 타 공동주택과 동시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후 동시에 당첨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1세대 내에서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라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 여부 판단 대상자의 주택소유 여부에 의거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청약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등·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 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추천기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종사자
추천기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경상남도 동부보훈지청 복지과	경상남도 동부보훈지청 복지과	경상남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위치도 및 견본주택 오시는 길 안내

위치도						
견본주택 약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b>견본주택 주소</b></td> </tr> <tr> <td><b>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번지</b></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b>대표 번호</b></td> </tr> <tr> <td><b>055)242-0050</b></td> </tr> </table>	<b>견본주택 주소</b>	<b>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번지</b>	<b>대표 번호</b>	<b>055)242-0050</b>
<b>견본주택 주소</b>						
<b>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4번지</b>						
<b>대표 번호</b>						
<b>055)242-0050</b>						

※ 상기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창원 롯데캐슬 어반포레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lotecastle.co.kr>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창원 롯데캐슬 어반포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 견본주택 운영은 사전예약을 통한 방문관람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